

## 사하구수입중지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0. 12. 21 ----- 사하구청장

나. 회 부 일 자 : 2000. 12. 22

다. 상 정 일 자 : 제8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

제1차 총무위원회(12. 27) 상정, 원안가결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(윤여철 세무과장)

#### 가. 제안이유

-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행정규제사무 정비계획과 관련하여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, 같은법 시행령, 같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우리구 수입중지 조례중 과도한 규제조항을 개선 정비하려는 것임.

#### 나. 주요내용

- 수입중지 판매인 지정제를 계약제로 개정 (안 제8조)
- 수입중지 판매인의 명의 변경, 위치변경 시 10일전까지 신청, 신고토록 한 사항을 2일전까지 신고, 신청토록 완화 (안 제12조)
- 수입중지 판매인 지정제를 계약제로 개정함에 따른 별지 서식을 요건에 맞도록 개정 (안 별지1호, 2호, 8호, 9호 서식)

### 3. 관련법령

-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4조
-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
-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5조 및 6조

#### 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행정규제사무 정비계획과 관련하여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, 시행령,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우리 구 수입중지 조례 중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 내용을 중앙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우리 구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선 정비하였으므로 개정 요구 조례안과 같이 통과시켜 운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#### 5. 질의답변 요지 : 생략

#### 6. 토론요지 : 없음

#### 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